



국가별 유기농 관리 및 시장 현황

World trends of organic 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s

< 편집부 >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층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은 각 분야에서 신종 사업으로 성행하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는 웰빙 붐과 맞물려 친환경,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소규모 매장을 차지하고 있던 유기농산물 판매대의 위치와 규모가 점차 중앙으로 확장, 이전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도 조심스럽게 유기농을 강조한 제품의 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성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생산지는 약 2천4백만 ha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백만 ha가 증가한 면적이다. 유기 식품의 시장 규모도 2002년 기준 이미 23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각 국가별 유기농에 대한 관리 체제 구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FOA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등 정부에서 유기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유기 식품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입되는 유기 식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시장, 아울러 각국의 관리 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유기 식품 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국가별 유기농 관리 현황

1) 국제 기준

코덱스의 유기 식품 규정은 유기농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은 IFOAM 기준과 유럽의 유기 식품법(EU Regulation 2092/91, 1804/99)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CODEX의 유기 식품 관련 규정은 크게 (1) 유기 생산과 조제 (2) 표시와 강조 표시 (3) 검사 및 인증제도 (4) 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CODEX 기준과 함께 국제 기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준은 IFOAM의 「The Basic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 (IBS)」이다.

IBS 역시 유기 제품의 재배, 생산, 가공 및 취급에 관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으며 IFOAM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국가별 유기농 관리 기준 비교

유럽 연합에서는 유기 재배된 작물에 대해서는 1993년 제정된 EU Regulation 2092/91에 의해, 또한 유기적으로 사육된 축산물은 2000년 제정된 EU Regulation 1804/99에 의해 유기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EU Regulation 2092/91에 근거하여 인증 및 평가기관으로 인정된 기구는 ECOCERT이며 독일, 프랑스 등 각 국별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FOAM의 기준과 유럽의 ECOCERT의 기준을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유기 농산물 인정에 대한 심사 척도

① 대상 농산물의 생산방법, 작물과 가축에 대한 투입자재(비료, 농약, 사료 등)

화학합성물질(화학비료, 합성살충제·제초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 품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a. 국내 규정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가능목록(별표 1, 3)을 제시하고 있다.

b. Ecocert : 유기식품에 사용가능 자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부속서(Annex VI)에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c. 사용가능 자재 목록 비교 :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동일하여 동등성이 인정된다. 규정 범위에는 자재, 재배방법, 생산, 수확, 운반, 저장, 제조, 포장, 용수, 종사, 생산물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② 비료로 가축 배설물(분뇨)을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조건 규정한다.

a. 국내 규정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완숙 가축 분뇨는 과일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을 농산물이나 지하수에 혼입시켜 인체위생상 문제나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 Ecocert : 유기식품에 사용가능 자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부속서(Annex III)에 검사규정, 정부 승인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c. 사용조건 :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동일하다.

③ 병해충, 잡초 대책으로 윤작, 기계중경, 생물학적 방제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a. 국내 규정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 관련(별표3) 재배방법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Ecocert : 병해충, 잡초대책을 부속서(Annex I)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Legumes(두과), green-manures(녹비), deep-rooting plant(심근성)를 재배하도록 규정한다.

④ 화학물질 등의 사용을 금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우 사용중지 후 일정기간(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파종 또는 이식에 의해 생산을 시작한 농산물만을 유기농산물로 인정(IFOAM)한다.

a. 국내 규정 : 재배, 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별표3)에 규정한다. 유기농산물 인정은 다년생 작물

(목초제외)인 경우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종 또는 이식에 의해 생산을 시작한 농산물만을 인정

b. Ecocert : 위와 동일하게 규정

⑤ 유기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 관련 규정

a. 국내 규정 : 유기농립축산물 2년 이상 기록 유지

전환기유기농립축산물 1년 이상 기록 유지

무농약농산물 1년 이상 기록 유지

저농약농산물 1년 이상 기록 유지

b. Ecocert : 국내 규정과는 달리 유기농립축산물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록은 2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 규정 비교 : 국내에서 인정하는 무농약·저농약 유기농립축산물에 대하여 Ecocert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cocert가 국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⑥ 유기농산물 용어 표시

a. 국내 규정 : 유기농·임·축산물

b. Ecocert : organic (영어), oekologisch (독일어), ecologico (스페인어), biologique (프랑스어), biologico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biologisch (화란어)

(2) 가공식품의 유기농식품 심사 척도

① 원재료의 인정기준

a. 국내 규정 : 원재료의 95%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임·축산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Ecocert : 위와 동일기준

② 유기농식품의 인정기준

a. 국내 규정 :

유기원재료 100%의 경우 「유기농 100퍼센트」 표시

유기원재료 95% 이상의 경우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가능, 주표시면에 표시가능.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유기원재료 70% 이상~95% 미만의 경우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 가능.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 일부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원재료명 옆에 (~%)로 유기농산물 함량을 표시

b. Ecocert France :

유기원재료 95%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유기원재료 50%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단,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가 가능하며, 유기원재료의 함량중량비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함유물 목록을 표시한 경우와 함유물 목록에서 동일한 색상·글자크기·글자체로 함유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c. Ecocert Belgium :

유기원재료 95%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유기원재료 70%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단, 원재료 표시란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기농 생산방식」이 표시된 동일면에 유기농원재료 함량을 %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기원재료 50% 이상인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단,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가 가능하며, 유기원재료의 함량중량비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함유물 목록을 표시한 경우와 함유물 목록에서 동일한 색상·글자크기·글자체로 함유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d. 규정 비교 : 가공식품에 저함량 유기원재료 함유 시 표시허용여부에 대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로부터 인정된 가공식품 중 유기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국내 기준의 최저 함량인 70%에 미치지 못하나, 원재료 표시란에만 표시한 경우는 인정이 가능하다.

각국의 유기농 관련 기준에 대한 비교를 <표 1>에 나타냈다.

2. 세계 유기농 생산 현황

IFOAM이 독일유기농업재단(SOEL)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생산지는 약 2천4백만 ha에

이르며 100여 개 국가가 유기농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유기 생산지 중 50%에 가까운 1천만 ha가 호주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 넓은 지역이 3백만 ha에서 유기농이 행해지고

【표 1】 각국의 유기농 관련 기준 비교

	대한민국	영국	일본	파라과이	중국
유기농산물/식품 관련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식품위생법10조, 「식품등의표시기준」	UKROFS(UK registered organic food standards)-(EEC2092/91을 따름)	유기농산물의일본농림규격,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일본농림규격	유기,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제품 판정기업 등록부	국가유기농식품생산지관리감독규정
유기농산물/식품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국 MAFF산하기관인 UKROFS가 유기식품컨설팅기관 인증 및 감독을 실시-인증기관 (UK1:UKROFS,UK2:OF&G, UK3:SOPA, UK4:OFF,UK5:SACL,UK6:BDAA, UK7:IOFGAL, UK9:OTL, UK10:CMIC UK11:ICS, UK12:OCL UK13:QWFC UK14: SGS UK15:OCUK15)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은 기관(2003.8.31 현재 87개 기관)	농축산부 식물보호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유기영농관련 자료보관	유기농립축산물 2년 이상, 전환기·무·저농약농산물1년 이상	유기농생산 3년 이상 전환기 1년 이상	3년 이상	규정이 명확히 없으나 내용상 3년으로 추정됨	최소 3년 이상
유기농장 전환소요기간	다년생 작물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 경과	다년생 작물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 경과	다년생작물 최근 수확전 3년 이상,그외의 작물 재종 또는 이식전 2년 이상	유기농생산방식으로 2년 이상 생산하여야 하며, 3년이 되면 유기물상품으로 인정 2년동안은 과도기로 인정	1년생작물 : 2년이상, 다년생작물 : 3년이상, 육용소, 말, 낙타 : 1년이상, 양, 돼지 : 6개월이상, 유생산가축 : 3개월이상, 생후 3일내 구입 가축: 10주이상 산란용가축 : 6주이상, 꿀벌 : 1년이상, 수산물 : 1년이상
유기농산물 용어 표시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	Organic	organic	유기물	유기농제품
유기원재료의 인정기준	원재료의 95% 이상	원재료의 95% 이상	원재료의 함량 대비 5% 이하, 식품첨가물은 최소량 사용	원재료 함량대비5% 이내의 비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원재료의 95% 이상
유기농식품 표시인정기준	-100%:「유기농100퍼센트」 표시 -95% 이상: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 명 일부 사용가 주표시면에	-유기원재료 95%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관련규정 없음	

유기농 및 가공식품 현황

	대한민국	영 국	일 본	파라과이	중 국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정기준	표시원재료명 표시란에 함량 백분율표시 -70%이상~95%미만: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 가능. 원재료명 표시란에 함량백분율표시 -특정원재료 사용시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가능. 해당 원재료명옆에 (%) 표기	-유기원재료 70%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 · 광고 단, 원재료 표시란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기농 생산방식」이 표시된 동일면에 유기농원재료 함량을 %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산물가공식품 2.유기○○또는 ○○유기organic 3.organic○○또는 ○○organic ※「○○」는 일반적인 가공식품의 명칭 기재	관련규정 없음	- 100% : 「100% 유기농」 표시 - 95%이상 : 「유기농」 표시
	이탈리아	터 키	브 라 질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유기농산물/ 식품 관련 법률	EU directive (EEC No 2092/91)	Regulation 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organic farming [Official Gazette no. 23420 (1998 . 8. 1)]	Service Of Seals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 EU directive(EEC2092/91), Natural Organic Program (USDA), JAS Rules(Japan)의 규정을 따름	- 아르헨티나 유기생산물법 - 국립유기생산물인증업체 등기소법	에쿠아도르 친환경 생산 장려 및 규제를 위한 법령 3609호
유기농산물/ 식품인정기관	Ecocert Italia	The control and/or certification body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부대표와 터키 시민(2년 이상 문서작성 경험자)으로 구성된 위원회)	ECOCERT BRAZIL	농림수산식품국 산하 국립보건농식품품질관리소 (SENASA) - (SENASA에서 설립한 전국의 유기생산물인 인증체 등기소에서 실무)	농축산부 주관 국립연구원, 농축산기술 이전 및 확대사무소 (DITTE) 참여
유기영농관련 자료보관	유기농림축산물만인정, 기록 2년 이상	유기농장 전환소요기간 동안	유기농생산 3년 이상 전환기 1년 이상	유기농생산 3년	관련규정 없음
유기농장 전환소요기간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는 2년	다년생작물 3년 이상, 일년생작물 2년	다년생 작물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 경과	최소 2년 식물보건품질연구소 (IASCAV)의 동의하에 연장 · 단축 가능	다년생 작물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 경과
유기농산물 용어 표시	biologico	Organic plant product Organic animal " Organic fishery "	Organic products	ecologico(스페인어) Organic products	Org anico(유기)
유기원재료의 인정기준	원재료의 95% 이상	관련규정 없음	원재료의 95% 이상	원재료 함량대비 비유기 생산물 5% 이하	원재료 함량대비 비유기생산물 5% 이하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정기준	95% 이상 : 「유기농생산방식」 표시 50% 이상: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유기농생산방식」 표시 가능	관련규정 없음	-유기원재료 95%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 · 광고 -유기원재료 70% 이상의 경우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한 표시 · 광고 단, 원재료 표시란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기농 생산방식」이 표시된 동일면에 유기농원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아르헨티나의 규정에서는 유기원료 95%이상을 사용하여 통조림제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허용기준은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성분 100%가 유기농 성분일 경우에만 상표 정면에 「100%유기농」 표시 - 성분95~99%가 유기농일 경우 상표정면에 「유기농」 표시

	이탈리아	터 키	브 라 질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정기준			재료 함량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가 가능하며, 유기원재료의 함량중량비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함유물 목록을 표시한 경우와 함유물 목록에서 동일한 색상·글자크기·글자체로 함유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성분 94%이하일 경우 「유기농」이란 표시는 제품 성분표에만 표시, 「유기농」이란 용어를 상표정면에 사용 불가

있는 아르헨티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고에 비해 전체 유기농 경작 면적은 약 1백만 ha 증가했으며 호주 지역은 5백만 ha 감소, 아르헨티나는 20만 ha가 감소했다.

유기 농지 면적이 넓은 상위 30개 국가와 총 농지 대비 유기농 비율이 높은 30개국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기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지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로 약 1천만 ha에 달하며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미국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 농지 대비 유기농업 경지 비율이 높은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이 26.4%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호주, 유럽 및 남미에 편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나라	유기농 경지(ha)	나라	총농지 대비(%)
오스트리아	297,000	에스토니아	3.00
칠레	285,268	스페인	2.28
우크라이나	239,542	포르투갈	2.20
체코	235,136	슬로바키아	2.20
멕시코	215,843	오스트레일리아	2.20
스웨덴	187,000	네델란드	2.19
덴마크	178,360	룩셈부르크	2.00
방글라데시	177,700	슬로베니아	1.91
핀란드	156,692	프랑스	1.70
페루	130,246	헝가리	1.70
우간다	122,000	아르헨티나	1.70
스위스	107,000	칠레	1.50
헝가리	103,672	벨기에	1.45
파라과이	91,414	우간다	1.39
포르투갈	85,912	벨리제	1.30
에쿠아도르	60,000	캐나다	1.30
터키	57,001	볼리비아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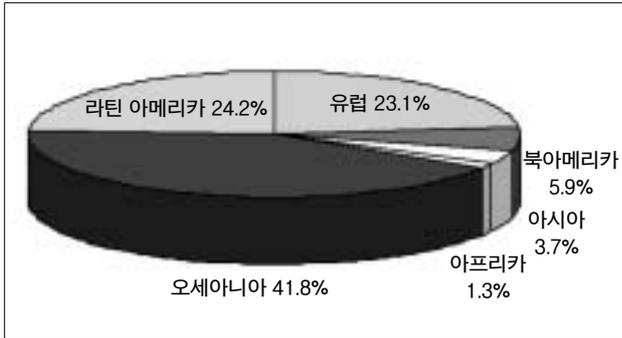
[표 2] 세계 유기농 경지 현황(SOEL-Survey, 2004)

나라	유기농 경지(ha)	나라	총농지 대비(%)
오스트레일리아	10,000,000	리히텐슈타인	26.40
아르헨티나	2,960,000	오스트리아	11.60
이탈리아	1,168,212	스위스	10.00
미국	950,000	이탈리아	8.00
브라질	841,769	핀란드	7.00
우루과이	760,000	덴마크	6.65
영국	724,523	스웨덴	6.09
독일	696,978	체코	5.09
스페인	665,055	영국	4.22
프랑스	509,000	독일	4.10
캐나다	478,799	우루과이	4.00
볼리비아	364,100	노르웨이	3.13
중국	301,295	코스타리카	3.11

에서는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유기농 생산 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기농 면적은 902ha, 총 농지 대비 유기농 경지는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기 식품 시장 전망

2002년 기준 세계 유기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230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 농산물의 생산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유기 가공식품의 판매는 선진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그림 1] 세계 유기농 생산 면적

보이고 있다. 즉 고학력 중산층이 많은 선진국에 유기농 식품 시장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고소득층의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유기농 식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IFOAM이 Organic Monitor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세계 지역별 유기 식품 시장을 살펴보자.

1) 유럽

세계적인 유기 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서유럽 지역은 199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북아메리카의 추격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유기농 판매량은 2002년에 비해 8% 성장한 105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럽 유기식품 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 즉 유기농 육류나 유제품은 공급 과잉을 보이는 반면 유기농 곡물은 지속적인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찍부터 농작물 경작지가 유기 축산 농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인 30억6천만 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유기농 열풍은 지난 2002년 7월 발생한 유기농 가공류의 금지 살충제 Nitrofen 오염 충격으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유기 식품 시장은 세계에서 세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2002년 기준 소매 판매량으로 약 15억달러 시장을 형성했으며 매년 20~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각각 13억달러 규모의 유기 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유럽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2년 7억6천6백만달러의 시장을 형성해 유럽에서 5번째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소비자의 연간 유기 식품 소비액이 1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유럽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인들도 연간 71달러를 유기 식품을 구입하는 데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전체의 유기 식품에 대한 소비액은 연 평균 약 27.2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스페인 7.3달러에서 스위스 105달러에 이르기까지 유럽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는 평균 40달러를 소비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의 평균 소비량이 40달러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유럽에서의 유기 식품 시장은 약 154억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미

북미 지역의 유기 식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IFOAM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유기 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12% 성장한 117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USDA는 2002년 10월 National Organic Programme (NOP)를 시행했다. NOP는 미국 정부의 유기농 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이 정책으로 유기농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됐고 소비자 신뢰 또한 증가시킴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로고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NOP 시행이 미국 전역의 소매점에서 관련 제품들이 대량 유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 유기농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에서 조사한 2003년 미국 유기농 산업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약 108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20.4%

성장한 103억8천만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OAT 자료에 근거한 최근 미국 유기 식품 시장 현황은 <표 3>과 같고 식품 분류별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3】 미국 유기 식품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 도	유기 식품 시장	성장률	전체 식품 시장	유기식품 침투율
1997	3,566	na	443,724	0.8
1998	4,272	19.8	454,071	0.9
1999	5,043	18.1	474,678	1.1
2000	6,104	21.0	498,379	1.2
2001	7,359	20.6	521,831	1.4
2002	8,624	17.2	538,033	1.6
2003	10,381	20.4	554,830	1.9

OTA 2004년 Manufacturer Survey

【표 4】 식품 분류별 미국 유기 식품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분 류	판매량	2003년 성장률
유제품	1,385	20.3
제빵 곡류	966	22.9
음료	1,581	19.3
과채류	4,336	19.9
스낵 식품	484	29.6
포장/가공식품	1,326	16.0
소스/양념	229	23.5
육류/생선/가금	75	77.8
계	10,381	20.4

OTA 2004년 Manufacturer Survey

한편 캐나다 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 약 7억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매년 15~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7월 발생한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소매상들을 중심으로 유기농 제품이 식품 시장에서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다.

3) 남미

남미 지역은 580만 ha의 유기 경작지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유기농 생산지다. 그러나 유기 식품 시장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 재배된 유기농 제품들은 수출되고 있으며 10% 가량

이 남미 지역에서 소비된다.

이 지역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고품질의 신선 유기농 제품 생산지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유기 식품 시장은 2002년 약 1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도시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의 점차 높아지고 있다.

4) 아시아

일본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2002년 기준 약 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JAS 규격을 통한 유기농 인증이 시작되면서 2001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성장한 3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국가로부터의 유기 식품에 대한 인증이 소비자 신뢰를 얻게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이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도 유기 식품의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은 유기 재배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오세아니아

세계 최대의 유기농 생산지인 호주는 2002년 기준 2억 달러의 유기 식품 시장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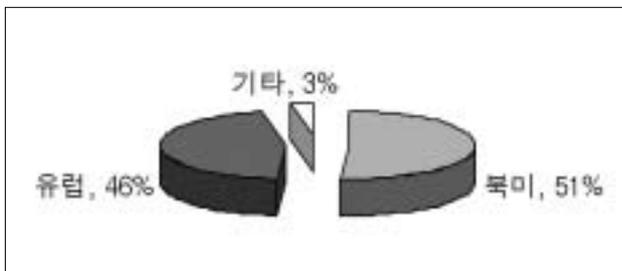
이 지역의 유기농 산업은 수출을 위한 1차 산물에 주력하고 있으며 판매량도 소비자 관심 증가와 함께 매년 15~20% 성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수출 중심으로 키위, 양고기 등의 1차 산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수 시장은 미미한 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럼 유기농 생산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기농 식품의 판매는 선진국 중심으로 한정되는 양상이다<그림 2>.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북미와 유럽에서 97%가 소비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지역이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식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된 중산층이 많은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소득과 함께 유기 식품 소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 수준으로 식품 안전이나 환경, 건강 등에 대한 지식이 유기 식품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4. 전망



[그림 2] 세계 유기 식품 소비 현황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된 유기농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나 신소재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이 식품 제조 기술에 도입되어 편리하고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이 개발되는 것과 동시에 보다 자연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 전에 불과하지만 지난 '99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60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량도 매년 30~40% 이상 급성장 하고 있어 식품 업계에서도 이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서 살펴본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기 식품의 유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 업계에서도 유기 식품 시대를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소규모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던 추세에서 점차 대량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공식품에 있어서도 두

부, 이유식 등 원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유기」를 강조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 관심 증가와 시장 활성화와 함께 정부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 부재가 최근 연이어 보도되면서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유기 가공식품은 표시 제도만으로 관리되고 있고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파악이나 표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유기농 업체의 시선도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이 거대한 유기 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 시장으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 유기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국내로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유기농협회(OTA)에서 한국 시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식품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건강 지향적이고 따라서 고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 제품에 대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식은 30%,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추세인 유기 식품 시장 확대가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유기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유기 식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KFI**

【참고문헌】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04, IFOAM
 OTA Market Overview South Korean Organic Market, 2004.4, OTA
 알기쉬운 식품등의 표시기준, 금보연, 한국식품정보원
www.ifoam.org / www.fao.org / www.intracen.org